구 분	경 영	제정일자	2019. 5. 14.
표 준 명	투명경영위원회 운영 규정	페이지수	7(표지 포함)
표준번호	LCC-A-0016A	작성부서	컴플라이언스팀

개 정 전	개 정 후
	■ 신규 제정(2019. 5. 14.)

구 분	작 성	검 토	승 인
	컴플라이언스팀	담당 임원	이사회
서 명			
승인일자		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**롯데케미칼주식회사**(이하 "회사"라 한다) 투명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,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,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,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,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승인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위원의 의무)

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

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(구성)

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전체 위원 수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 만료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
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6 조(위원장)

① 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6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하여 회의 개최일 직전일까지 각 위 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의안제출)

① 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

②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제11조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그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시행령 제17조의8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
2.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3.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10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4. 회사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의 거래조건(거래금액 및 조건,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)을 20%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
5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2 조(의견청취권)

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록)

간사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4 조(간사)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준법지원인으로 하며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팀이 위원회 및 간사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